

2020 제4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맞춤형 법제정보

- 일 본 제품안전법제
- 미 국 표시·광고법제
- 중 국 기업활력법제

◆ 외국법제동향

- 대 만 「국민법관법」
- 호 주 「현금사용제한법」
- 미 국 「로비스트법」
- 일 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법제
- 일 본 학교복합화 시설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신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일본의 제품안전법제 주요 내용

고철웅 |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

I.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안전성·품질·표시, 계약의 체결·내용, 시장질서의 유지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충실히 정비해 왔다. 소비자법은 사회의 발전을 통해 여러 다양한 소비자 문제가 등장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지향적”인 특징을 지닌다.¹⁾ 또한 소비자법은 민법·상법·행정법·경제법·형법·소송법 등 여러 법분야가 총체적으로 관계하는 “복합법 영역”이다.²⁾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소비자 관련 중요입법으로 1994년 「제조물 책임법」, 2000년 「소비자계약법」, 2004년 「공익통보자 보호법」, 2006년 「소비자계약법」의 개정(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2007년 「특정주택하자 담보책임이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소비자안전법」 등을 제정하였다. 행정적으로는 2009년에 내각부(内閣府) 산하에 소비자청(消費者廳)을 설치하여, 종래 여러 부처에서 관할해 온 소비자행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 및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2019년 1년 동안 소비자청에 통지된 소비자사고는 11,944건으로서 생명·신체사고가 2,632건, 재산사고가 9,312건으로 적지 않은 숫자이다.³⁾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사기 문제,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로 주택, 자동차의 손해에 관한 문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나 인터넷 이용 도중 건강식품, 화장품 등 정기구매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⁴⁾

1 大村敦志, 消費者法, 제3판, 2007, 12면.

2 상께서, 같은 면.

3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research/white_paper/assets/2020_whitpaper_all.pdf, 5면.

4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research/white_paper/assets/2020_whitpaper_all.pdf, 39면 0이하.

이하에서는 먼저 소비자 제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법제를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제를 살펴보기로 한다(Ⅲ). 끝으로 본문에서 살펴본 일본 법제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한다(Ⅳ).

II. 제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법제

일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는 「소비자안전법」,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계약법」, 「제조물 책임법」, 「경품표시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 등이 있다.⁵⁾

1. 소비자제품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제

「소비자안전법」은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제품, 시설, 서비스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서, 2009년 소비자청의 설치와 동시에 제정되었다.⁶⁾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상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기본방침의 책정,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에 의한 소비생활상담 등 사무의 실시 및 소비생활센터 설치, 소비자사고 등에 관한 정보의 집약 등,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다.

「소비자안전법」은 일반법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제품안전에 관한 규율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⁷⁾ 소비생활용제품은 단순한 구조의 제품부터 고도의 과학기술을 사용한 복잡한 제품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규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먼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

5) 소비자제품안전법제에 관한 소개 및 고찰로, 고형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을 중심으로 –”, 2010, 163면 이하; 김재영, “일본 소비자제품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충북대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2017, 493면 이하 참조.

6) 「消費者安全法(平成二十一年法律第五十号)」, 이 법률에 관해서는 고형석, “일본 소비자안전법”, 월간 법제 제619호, 법제처, 2009, 14면 이하 참조.

7)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昭和四十八年法律第三十一号)」, 이 법률에 관해서는 이세정,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최신 개정동향”, 해외법제 뉴스, 한국법제연구원, 2007 참조.

기 전에는 특별특정제품(4개 품목)⁸⁾ 및 그 이외의 특정제품(6개 품목)⁹⁾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별특정제품은 등록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를, 그 이외의 특정제품은 자주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이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각 제품에 소비자제품안전(Product Safety Consumer, PSC)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¹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해 따로 규제되고 있으며, 법률 이외에도 일본산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규격¹¹⁾이나 업계가 규정하는 규격 등도 존재한다.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후의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특정보수제품(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장기 사용제품 안전점검제도, 위해방지명령, 제품사고 정보보고가 있다. 제품사고 정보보고 공표제도는 제품기인성(製品起因性)이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중대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1) 사고정보의 수집, 공표 및 주의환기

소비자청은 국민생활센터와 연계하여 생명 및 신체에 관한 사고정보를 널리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고정보 데이터뱅크’를 2010년 4월 1일부터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안전법」 제12조¹²⁾ 및 제29조¹³⁾에 의거하여 생명 및 신체피해에 관한 소비자 등의 사고에 관해 주1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고, 2019년에는 중대사고를 50회 공표하였다. 또한 「소비생활제품안전법」 제36조¹⁴⁾에 의거하여 보고된 중대제품사고에 관해 주2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고, 2019년에는 101회 공표하였다.¹⁵⁾

.....

- 8 4개 품목은 영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육조용 온수순환기, 라이터이다.
- 9 6개 품목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승차용 헬멧, 등산용 로프, 석유급유기, 석유온수기, 석유난로이다.
- 10 소비자제품안전(PSC) 마크란 소비생활용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특별히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붙이는 마크이다.
- 11 일본산업규격(JIS) 기준이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인정기준작성기관의 신청 또는 일본산업표준조사회의 심사를 받아 주무대신이 제정하는 규격으로 국가표준 중 하나이다.
- 12 「소비자안전법」 제12조(소비자사고 등의 발생에 관한 정보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 도도부현 지사, 시정촌장 및 국민생활센터의 장은 중대사고 등이 발생한 취지의 정보를 얻은 때에는 즉시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 및 해당 중대사고 등의 개요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13 「소비자안전법」 제29조(신청을 받은 경우의 통지) ① 조사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중대사고 등이 발생한 취지의 정보를 얻은 때에는 즉시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 및 해당 중대사고 등의 개요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14 「소비생활제품안전법」 제36조(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공표) ①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중대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해당 중대제품사고와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중대제품사고와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의 내용 및 그 밖에 해당 소비생활용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의 회피에 이바지하는 사항을 공표한다.
- 1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research/white_paper/assets/2020_whitepaper_all.pdf, 210면.

(2)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경제산업성은 소비자청에 보고되는 중대제품사고의 정보나 경제산업성에 보고되는 리콜 정보 등에 관해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표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공보나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ITE)에서도 최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제품이나 계절별로 사고가 증가하는 제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립된 행정법인으로서 국민생활센터(이하 ‘국민생활센터’라 한다)에서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이나 품질 및 표시 등에 문제가 있는 상품에 관해 소비자피해의 구제나 사고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상품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테스트 결과, 상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사고원인의 조사와 재발방지

소비생활용제품의 사고에 관해서는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에 의한 조사, 국민생활센터에 의한 상품테스트로 원인이 규명되기도 한다. 다만, 소비자가 사용방법을 몰라 문제가 된 경우에는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조사에서는 제품기인성이 부인되거나 원인불명으로 될 수 있다.

2012년 10월부터는 소비자청에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 피해에 관한 사고 중에서 사고의 발생 및 확대방지, 피해의 경감을 위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높은 사고를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른 행정기관 등이 조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활용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발생 및 확대방지를 위해 강구해야 할 정책, 조치에 관해 내각총리대신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9년 5월에는 보행형 로터리 제설기에 의한 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였고, 「소비자안전법」 제33조¹⁶⁾에 의거하여 소비자청 장관 및 경제산업대신에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원회 발족부터 2019년도까지 총 391건을 접수받았다(2019년 접수는 44건).¹⁷⁾

16 「소비자안전법」 제33조(의견의 진술)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소비자안전의 확보의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명·신체사고 등에 의한 피해의 확대 또는 해당 생명·신체사고 등과 동종 혹은 유사한 생명·신체사고 등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시책 또는 조치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research/white_paper/assets/2020_whitepaper_all.pdf, 211면.

2. 제품안전표시의 신뢰확보 관련 법제

(1) 부당한 표시의 제한 및 금지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안전 및 품질표시에 관련하여서는 안전의 확보(제11조), 광고 외 표시의 적정화(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6조).¹⁸⁾

의료 및 의약품 표시 관련에서는 「의료법」이 규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정사항(제6조의 5 제3항 제1호~제14호)만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그 외 일체의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2017년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광고’가 ‘광고 외의 의료를 받는 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표시’로 확대되어 종래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도 규제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¹⁹⁾

가정용품에 관해서는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다.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섬유제품, 합성수지가공품, 전기기계기구 및 접착공업품 중 구입할 때 소비자가 품질의식 별이 곤란하고 특별히 품질을 식별할 필요성이 높은 것을 정령에 의해 ‘품질표시가 필요한 가정용품’이라고 지정한다(제2조 제1항).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성분, 성능, 용도, 취급상의 주의 등 품질에 관해 표시해야 할 사항과 표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품목별로 정하고 있다(제3조).

「경품표시법」²⁰⁾은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실제의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 중에서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한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취소, 재발방지 대책의 실시 등을 명하는 행정처분(조치명령) 등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청에서는 「경품표시법」 규정에 근거한 조치명령 2019년도에 40건 실시했다. 「경품표시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4년 개정 법률이 2016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소비자청은 경품표시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2019년도에 17건 실시했다.²¹⁾

18 자세히는 김재영,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규정에 관한 고찰”, 충북대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2015, 495면 이하 참조.

19 日本弁護士連合会編, 消費者法講義, 第5版, 2018, 247면[齋藤雅弘].

20 不當景品類及び不當表示防止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三十四号).

21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research/white_paper/assets/2020_whitpaper_all.pdf, 218면.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청은 업계가 자주적으로 정한 ‘공정경쟁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의 변경에 관해 공정거래협의회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2019년도는 19건의 변경인정), 공정거래협의회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규약의 적정한 운용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2) 보증표시에 관한 문제

보증표시에 관한 문제는 가전제품 등 상품을 구입하면 제조업자 등의 ‘보증서’에 의한 수리 및 교환에 관한 문제를 가리킨다. 보증서에는 보통 보증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교환이나 수리내용 및 조건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료로 상품의 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 측이 제조업자의 고의 및 과실 또는 결함의 입증을 하지 않고도 수리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의 제조업자가 「민법」의 일반적인 법률관계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보증의 채무부담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제조업자의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의 수령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해석되고 있다.²²⁾ 보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였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있으면 제조업자를 상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²³⁾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판매점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조업자를 상대로는 제조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III. 피해구제 및 이익보호를 위한 법제

앞의 논의에서는 일본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제품안전에 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후적인 구제 관련하여 최근에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 보기로 한다. 「소비자사법」의 중요 기둥 중 하나인 「제조물책임법」과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22 安永正昭, 消費者法講座 第2巻, 1985, 4면.

23 松本恒雄, “品質保証書と瑕疵担保責任”, 法学セミナー 463号, 88면.

1. 「제조물책임법」

(1) 결함의 판단요소와 입증책임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전문지식을 가지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일반 민사소송에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입증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입법으로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민법」상의 '과실' 대신 「제조물책임법」은 “해당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가져야 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제2조 제1항)”을 ‘결함’으로 정의하고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결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제조물의 특성, ②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용형태, ③ 제조업자 등이 해당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④ 그 외 해당 제조물에 관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2항). 그러나 4가지 요소도 결국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별 판례에서 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결함의 여부에 관해 ‘인도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에는 결함의 예견가능성을 일단 전제로 하여 그 결함없이 같은 효용을 실현하는 대체설계의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²⁴⁾ 다른 하급심 판례는 인도를 할 때 결함의 인식가능성, 예견가능성을 근거 짓는 의미에서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함의 판단 중에 과실 판단상 예견가능성과 같은 판단을 가져오는 것이 될 수 있고, 결함의 인식가능성, 예견가능성을 근거 짓는 의미에서 과학 및 기술수준은 결함의 판단을 할 때 고려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²⁵⁾ 이들 판례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판단요소로서 결함의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으로 과학기술의 수준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부모의 책임을 물어서 큰 비율로 과실상계한 사안이나,²⁶⁾ 결함을 부정한 사안²⁷⁾도 있어 피해를 입기 쉬운 미성년자 등의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도 적지 않다.

결함의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고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 휴대폰을 바지에 넣은 채로 2시간 반 정도 코타츠라는 난방기구에 들어가 있었는데 원쪽 대퇴부에 저온열

24 京都地判2018年(平成30)2月20日 判例集未搭載.

25 東京地判2018年(平成30)6月22日 TKC25560920.

26 鹿児島地判2008年(平成20)5月20日 判時 2015号, 116면.

27 和歌山地判2005年(平成17)3月2日 判例集未搭載.

상을 입은 사례에서 원고가 제조물 관련하여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비정상(異常)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였다며, “그 이상으로 구체적 결함 등을 특정한 뒤, 결함이 발생한 원인, 결함의 과학적 메커니즘에 관해서까지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입증책임을 완화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²⁸⁾ 또한 가정용 문서절단기가 사용 중에 파손되어 오른쪽 귀가 난청이 되는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도 비정상적인 사용이 사고원인이 된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보통의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손으로 신체피해가 발생한 이상, 해당 문서절단기의 결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도 있다.²⁹⁾

(2)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책임법」은 “해당 제조물을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때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식견(知見)에 관해서는 해당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제4조 제1호)”으로 배상책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의 실험재료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과 과학기술의 수준에 관한 해석여부에 따라 과실책임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게 된다는 점을 들어, 개발위험의 항변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는 정책적 배려에 의해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호가 입법되었다. 다만, 개발위험의 항변을 너무 쉽게 인정하게 된다면, 무과실책임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의 의의가 상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³⁰⁾

하급심 판례는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식견’에 관해 제조물의 결함여부를 판단을 위해 입수 가능한 최고수준의 식견일 필요가 있고,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경험·실험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확립된 지식의 총합(總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학문적으로 이론이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그 상세함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일 필요까지는 없으며, 지식·경험·실험 등으로 근거가 있고, 특정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인지될 정도로 확립된 것으로 충분하다며 개발위험의 항변의 적용을 부정하였다.³¹⁾ 다른 하급심 판례는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식견’이란

28 仙台高判2010年(平成22)4月22日 判時2086号, 42면.

29 東京地判2012年(平成24)11月26日 TKC25497279.

30 東京地判2002年(平成14)12月13日 判時1805号, 14면.

31 상계 주24) 판결.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경험·실험 등에 의해 사회에 확립된 지식의 총합으로, 그러한 지식 등이 공표되어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상세함이 과학적으로 이론 없이 증명될 정도로 확립된 것이라거나 특정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통설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지식 등에 의해 근거가 있고, 특정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인지될 정도로 확립된 것일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입수가능한 세계최고 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인도하는 경우에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식견을 유추하더라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피고의 개발위험의 항변을 배척하였다.³²⁾

(3) 배상청구권의 시효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6년 「민법」 개정(2020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민법」 제724조의 2)에 의해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의하면, 종전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5년으로 개정되었다(제5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 관련하여, 2016년 「민법」 개정에 의해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청구권은 “그 제조업자 등이 해당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제5조 제1항 제2호).” 종전 규정은 “그 제조업자 등이 해당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며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을 받은 형태의 규정이어서 10년의 기간의 성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즉, 통상적인 사용기간, 기록, 데이터 보관, 안전성 향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조업자의 관리를 벗어나 이미 장기간이 경과한 제조물의 결함에 관해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10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시효중단이 없고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2016년 개정에서 명문으로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되었기에 제5조 제1항 제2호의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32 상계 주25) 판결.

2. 소비자단체소송제도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요

소비자 관련 소송은 피해자가 다수이긴 하지만 한 건 당 피해액수가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제받기 위해 행동하기 보다는 불만은 있지만 할 수 없이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게 된 것이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이다. 즉,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단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2006년 5월 31일, 「소비자계약법」 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개정으로 소비자단체에게 부당권유 행위, 부당조항을 사용한 계약체결행위의 금지(差止)를 내용으로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008년 4월 25일에는 「경품표시법」, 「특정상거래법」의 개정에 의해 부당표시, 부당권유행위, 부당조항을 사용한 계약체결행위를 금지하는 권한이 소비자단체에게 부여되었다. 2013년에 제정된 「식품표시법」은 식품관련 사업자가 행하는 사실에 반하는 표시에 관해서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①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적격소비자단체가 ②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③ 「소비자계약법」·「경품표시법」·「특정상거래법」·「식품표시법」이 정하는 부당표시·부당권유행위·부당조항 사용행위에 관해 ④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³³⁾ 먼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적격소비자단체이다. 이 단체는 내각총리대신이 「소비자계약법」 제13조 제3항에서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단체이다.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NPO) 법인 중 하나일 것, 소비자의 이익옹호를 목적으로 활동실적이 있을 것, 인적·재정적 기반이 있을 것, 법률 및 소비생활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³⁴⁾ 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적격인정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연속해서 금지청구업무를 할 경우, 갱신을 해야 한다(제17조 제1항, 제2항).

33 「소비자계약법」 제12조, 「경품표시법」 제30조, 「특정상거래법」 제58조의 4~9, 「식품표시법」 제11조 참조.

34 2020년 8월 기준으로, 적격소비자단체는 21개가 인정되어 있다.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llective_litigation_system/about_qualified_consumer_organization/list/.

적격소비자 단체는 사업자가 아래 행위 중 하나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소비자계약법」에 해당하는 부당한 권유행위, 부당조항을 포함하는 의사표시(제12조), ② 「특정상거래법」에 위반하는 부당권유, 부당조항을 포함하는 의사표시, 하위·과대광고(제58조의18~24), ③ 「경품표시법」상 우량오인표시(優良誤認表示), 유리오인표시(有利誤認表示)(제30조 제1항), ④ 「식품표시법」에 의한 식품표시기준에 위반하여 판매식품의 명칭, 알러지 항원(Allergen), 보존방법, 소비기한, 원재료, 첨가물, 영양성분의 양 혹은 열량 또는 원산지에 관해 현저히 사실에 반하는 표시(제11조)가 있을 경우이다.

(2) 금지청구제도의 현황

금지청구소송 제소 후, 사업자는 금지대상이 되고 있는 부당계약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청에서 발간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금지청구사안은 식료품·건강위생품, 교양오락품, 차량, 토지·건물·설비, 렌탈·리스·대차, 공사·건축·가공, 금융, 운송·통신서비스, 교육서비스, 교양·오락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그 외 서비스로 분류된다.³⁵⁾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아래에서 소개한다.

부동산임대 관련하여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수선의무나 원상회복의무 등을 부과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해 ① 대실의 손상원인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임차인에게 있는지 불명확하거나 판정·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벽, 천장, 마루, 현관 도어락 등의 수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조항, ② 임차인이 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및 파산·민사재생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및 갱신거절 할 수 있다는 조항, ③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자연변화 및 손상의 경우에도 무거운 것을 설치하여 마룻바닥이 파였거나 냉장고 뒤에 전기로 인해 손상이 간 경우의 원상회복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사용되고 있었다. 상기 조항에 관해 소비자단체소송으로 금지를 청구한 결과, ① 임차인이 수리, 교체 등의 통지를 하여 임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의 부담으로 이를 행한다, ② 해당 조항의 삭제, ③ 예외적으로 무거운 물건에 의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의 설치로 인해 마루 등이 파인 경우, 수선 및 원상회복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시정되었다.³⁶⁾

3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llective_litigation_system/about_system/case_examples_of_injunction/pdf/consumer_system_cms204_190903_06.pdf, 21면.

36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llective_litigation_system/about_system/case_examples_of_injunction/pdf/consumer_system_cms204_190903_06.pdf, 28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도난에 의한 손해에 관해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이나 귀책사유의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있었는데, 소비자단체소송으로 금지를 청구한 결과, 해당 면책 조항에 관해서 사업자에게 고의 및 과실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조항이 수정되었다.

결혼식의 드레스 대여계약의 취소요금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결혼식 전 30일 전까지 취소료를 일률적으로 30%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금지청구의 결과 계약일로부터 결혼식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일로부터 일수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소요금이 증감하도록 개정되었다.

(3)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과제

금지청구를 하는 부당권유행위, 부당계약조항을 포함하는 의사표시를 엄밀히 특정하면 판결확정 후, 위반행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알기 쉬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해당 부정행위에 관해 약간 수정을 함으로써 금지판결의 효과를 피할 수 있다. 금지청구의 취지를 추상적으로 하면 집행단계에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집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³⁷⁾

사업자에게 명령하는 행위를 특정하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과제가 존재한다. “종업원을 상대로 금지가 인정된 정액보수분담금조항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사무를 하지 않도록 지시시킨다.”라는 청구가 특정성을 결여하는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 판례는 특정성을 결여한다는 입장과 특정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³⁸⁾

37 長野浩三, “消費者団体訴訟の検証と今後の課題”, 現代消費者法 14号, 59면.

38 京都地判2009年(平成21)9月30日判時 2068号, 134면[결여의 입장]; 大阪高判2010年(平成22)3月26日TKC25470736[특정의 입장].

3.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제도

종래의 소비자단체소송은 금지청구를 통해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전보해 주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자의 피해구제와 위법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을 반환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에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³⁹⁾에 의해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집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로서 일본의 독자적인 입법이다.⁴⁰⁾ 이 법률에 의하면, 특정적격소비자단체는 2단계의 절차를 거쳐 소비자의 피해를 전보하게 된다. 먼저 제1단계로서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위법하다는 등의 공통의무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이것이 인용되면 제2단계로서 개별소비자로부터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수권을 받아 사업자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여 수령한 금전을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제도에 의하면 장래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도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대를 받고 있다.

IV. 나오며

일본에서는 여러 입법 및 개정을 통해 소비자 제품안전의 확보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규제일변도로 소비자 안전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창설과 압력 및 압박에 의한 규범의 준수, 새로운 규범의 내면화에 의한 준수라는 방식으로 일본의 소비자 제품안전 법제는 설명될 수 있다.⁴¹⁾ 규제법령에 의한 과잉개입을 피하고, 조정이나 지원 등에 의해 자율적인 질서형성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법은 hard law뿐만 아니라 soft law가 더욱 중요시된다.

소비자피해의 회복을 위해 최근 입법이 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집단적 피해회복절차는 가능한 한 일반적인 민사재판절차에 적합한 형태로 가급적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립하였다. 비교법적으로 유래가 없는 집단적 피해회복절차는 일본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분명한 제도이며, 앞으로의 제도운용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9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五年法律第九十六号)」。

40 山本和彦, “消費者と民事手続法”, 中田邦博/鹿野菜穂子編, 基本講義 消費者法[第3版], 2018, 318면.

41 谷みどり, “製品安全のソフトロー”, 人間の尊厳と法の役割[廣瀬久和先生古希記念], 2018, 469면 이하.

참고문헌

- 고형석, “일본 소비자안전법”, 월간 법제 제619호, 법제처, 2009.
- 고형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을 중심으로–”, 2010.
- 김재영,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규정에 관한 고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2015.
- 김재영, “일본 소비자제품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2017.
- 이세정,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최신 개정동향”, 해외법제뉴스, 한국법제연구원, 2007.
- 安永正昭, 消費者法講座 第2巻, 1985.
- 大村敦志, 消費者法, 第3版, 2007.
- 日本弁護士連合会編, 消費者法講義, 第5版, 2018.
- 松本恒雄, “品質保証書と瑕疵担保責任”, 法学セミナー 463号, 2019.
- 長野浩三, “消費者団体訴訟の検証と今後の課題”, 現代消費者法 14号, 2012.
- 山本和彦, “消費者と民事手続法”, 中田邦博・鹿野菜穂子編, 基本講義 消費者法, 第3版, 日本評論社, 2018.
- 谷みどり, “製品安全のソフトロー”, 人間の尊厳と法の役割[廣瀬久和先生古希記念], 信山社, 2018.
-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research/white_paper/assets/2020_whitepaper_all.pdf (검색일 : 2020년 8월 24일).
-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llective_litigation_system/about_system/case_examples_of_injunction/pdf/consumer_system_cms204_190903_06.pdf (검색일 : 2020년 8월 24일).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하기 GO”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82
E-Mail. foreignlaw@klri.re.kr

FAX. (044) 868-9919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ISSN 1976-0760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